

특집

축산분뇨 단속 사례

법률에 대한 지도교육과 처벌이 양립되어야

이승호

순덕목장,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매류2리 299

목장소개

순덕목장(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매류2리 299)

축주 : 이승호씨(35세, 서울우유 여주낙우회 총무,
여주축협 대의원)

서울 말죽거리 근교에서 선대부터 낙농을 함.

대(代)를 이어 현재 목장소재지에서 목장운영중

사육두수 : 착유우 - 20두, 육성우 - 10두

우사형태 : 계류식 우사(30두 규모)

착유실 : 파이프 라인

사료포 : 5,000평(옥수수, 수단그라스)

우사바로 옆에 묻혀 있음.

위반사례

분뇨저장탱크 옆으로 분뇨가 흘러 나와 고여있던 물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 Biochemical Oxygen Demand의 약칭으로 수질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BOD가 크면 물속에 유기물이 많고 물이 오염되어 있음을 나타냄)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1ℓ 당 1,500mg이 하가 되도록 처리해야 하나 5,979mg으로 조사되어, 94년 3월 3일 구속당함.(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7호, 제28조 제1항을 위반함)

폐수처리시설

저장액비를 사료포인 밭으로 환원. 대형 정화조가



사료빈 아래에 기존의
분뇨정화조가 묻혀있다.
좌측의 허연 시멘트가
구속당해 있을때 만들어진
분뇨정화조 ○ 부분에
고인물을 측정당한 것이 법률에 위반됨.

구속당시 상황

'94년 3월 3일 아침 상기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니 오후 2시 30분까지 검찰로 출두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주지청으로 출두함.

착유시간이 되어 목장에 가 착유해야 됨을 말하자 구속임을 알려줌.

곧바로 입건되고 유치장으로 송치됨.

4월 12일 정역 6월을 구형받음.

4월 26일 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도받고 풀려남.

구속당시에는 전화연락도 못하게 해 집사람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구속사실을 알자 부인 김옥희씨(35세)는 대신 구속당하겠다고 애원했다고(이유는 부군이 구속당하면 목장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뇨가 정화조에 흘러나오게 된 이유는 '93년 늦가을 큰 정화조를 심기 위한 계획중 연연생인 둘째가 복부에 가스가 차 팽만해 서울로 수술입원하게 되고 이와중에 정화조공사가 지연되고 한 겨울에 작업을 시작하여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 후에 정화조 시멘트 작업중 주위에서 겨울에 정화조를 묻으면 터질 우려가 있다고 해 이듬해 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다시 매립하면서 기존의 정화조에서 분뇨가 흘러나와 분뇨가 고이게 되었고 이것이 단속에 걸리게 된것임.(이 고인물이 1ℓ에 BOD가 5,979mg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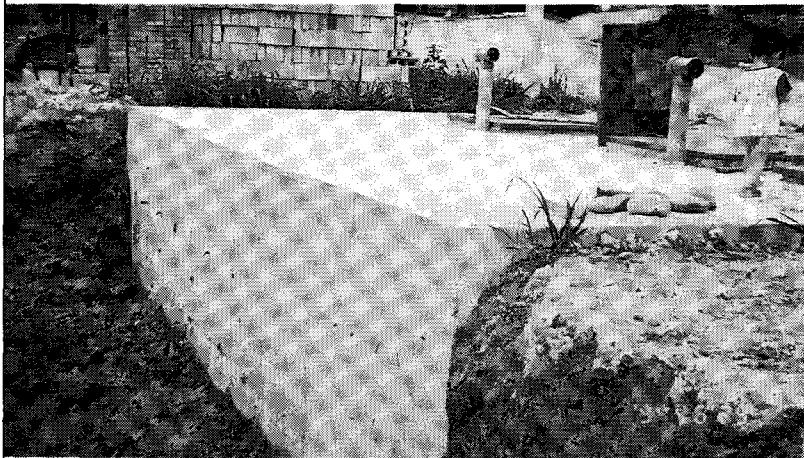
“

낙농가대표로 처벌받았다고 생각하며 검찰에 서도 공소내용을 전부 다 인정했고 잘못된 사실도 수긍하나 불만인 것은 법적제재받기전에 이런 규제내용을 전혀 몰랐고 이에대한 지도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이점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한번도 경고나 지도사항 없이 바로 인신구속을 하는 것은 국민의 억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에게 자기업을 포기하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최소한 지도홍보·교육과 처벌이 양립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함.

”

처리결과 보완내용

구속중에 친구들이 와 지난해 하려했던 용량이 큰 정화조를 기존 정화조옆에 설치함(이것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 받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새로 물은 분뇨정화조,
용량이 넉넉해
4~5년은 걱정 없단다.
구속중에 친구들이 와서
작업해 주었다고

단속에 대해

낙농가대표로 처벌받았다고 생각하며 검찰에서도 공소내용을 전부 다 인정했고 잘못된 사실도 수긍하나 불만인 것은 법적제재받기전에 이런 규제내용을 전혀 몰랐고 이에대한 지도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이점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한번도 경고나 지도사항 없이 바로 인신구속을 하는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에게 자기업을 포기하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최소한 지도홍보·교육과 처벌이 양립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함.

특히 이런 처벌방법이 지속된다면 대부분 영세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축산이 붕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한시대 이땅을 살고 있는 자연인의 공동된 책임이며 축산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각자의 목장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실태가 있으면 개선해야 하며 이는 적용되는 법률에 근거해 고쳐야 할 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법에 대해

이승호씨의 경우 분뇨가 목장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니고 사업장내(자기목장내)에 있었던 분뇨에 오염된 물에 의한 것이므로 이런 법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가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이었으며 구속전에, 법제재를 받기 전에는 법내용



지금도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매사가 조심스럽기만 하단다.
자신이 당한 일보다 다른 낙농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대개의 낙농가들도 저처럼 이런 법내용을 보를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집행유예중이라 운전하고 다니는 것 조차도 조심스러우며 때로는 불안하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겁도나고 낙농할 의욕이 없어집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교훈삼으시어 낙농가제위께서는 경각심과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라며 처지가 같은 영세낙농가 격정을 끝으로 이승호씨는 말을 맺는다.